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사육제한·폐쇄 명령의 세부 절차·기준을 마련하여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 1) 현행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이 불명확함에 따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행정처분 시 청문의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행정처분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안 제11조 및 별표2 개정)

- 1)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제5항)
- 2)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별표2)하여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정책 협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로 기대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제6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폐쇄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가축을 해당 사육시설·장소에서 반출·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위험도에 따라 가축방역상 긴급한 반출·처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처분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거나 가축방역상 긴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처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중점방역관리지구”라 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별표 4에 따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 등이 높은 지역의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하여 법 제3조의4제5항 및 법 제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육제한을 명할 것을 지시한 경우 보상금(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액조정된 최종 보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제11조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지급
2. 제1호 외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전액”을 “전액.”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조의4제5항 후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시하여 오리 사육제한 명령으로 폐업 등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손실평가액을 지급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사육제한 기준(제6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폐쇄 또는 사육제한 처분의 시작일은 가축 사육시설에서 가축이 모두 처분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1) “폐쇄”란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닫거나 막아 그 가축사육시설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육제한”이란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비워 그 가축사육시설에서 가축의 사육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라. 처분 기준 중 2회라 함은 1회의 처분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해당 위반사항을 위반하거나 1회의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3회 이상의 경우도 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2.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제한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이상	2회 이상	3회 이상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제1호	사육제한 3개월	사육제한 6개월	폐쇄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제2호	사육제한 3개월	사육제한 6개월	폐쇄
3)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입국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제3호	사육제한 3개월	사육제한 6개월	폐쇄

4)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제4호	사육제한 3개월	사육제한 6개월	폐쇄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제5호	사육제한 3개월	사육제한 6개월	폐쇄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제5의2호	사육제한 3개월 (3회 위반)	사육제한 6개월 (4회 위반)	폐쇄 (5회 이상 위반)
7)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위반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제6호	경고	사육제한 3개월	사육제한 6개월

[별표 4]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 등이 높은 지역(제11조제5항 단서 관련)

1. 최근 5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의 반경 3킬로미터 이내 지역 중 2회 이상 포함된 지역
2. 닭, 오리 등 가금 사육 농가의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3. 최근 5년간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점의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중 최근 5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농가가 있는 지역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② (생략)</p> <p>③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으로 한다.</p> <p>1. ~ 11의2. (생략)</p> <p><u>&lt;신 설&gt;</u></p> <p>12. (생략)</p> <p>④ 삭제</p> <p>⑤ (생략)</p> <p>제6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②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 11의2. (현행과 같음)</p> <p><u>11의3.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u></p> <p>12.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u></p> <p><u>④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폐쇄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방역상</u></p>

<신 설>

제11조(보상금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액조정된 최종 보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지급한다.

<단서 신설>

안전한 방법으로 가축을 해당 사육시설·장소에서 반출·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위험도에 따라 가축방역상 긴급한 반출·처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처분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거나 가축방역상 긴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처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보상금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다만,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중점방역관리지구”라 한다) 중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표 4에 따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 등이 높은 지역의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하여 법 제3조의4제5항 및 법 제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육제한을 명할 것을 지시한 경우 보상금(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액조정된 최종 보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지급
2. 제1호 외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

<신 설>

<신 설>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520